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

**2017. 12.**

## 목 차

I.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3
II. 예상세액 계산하기 .....	24
III.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42
IV. 간편제출하기 .....	49

# I.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HomeTax.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재보

조회/발급    (근로자) 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6 발급목록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간소화자료 제출    예상세액계산    공제신고서작성    한번에 내려받기    한번에 인쇄하기    제공동의현황

※ 귀속년도 2017년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카드오류신고    영수증발급기관조회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Debit Card)
0	115,200	315,600	30,000	485,360	1,772,450	15,054,641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 (Housing Funds)	주택미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Long-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6,640,280	12,560,160	0	0	0	0	0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기본내역    PDF다운로드    인쇄하기    신용카드안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용자	상호	사업자번호	종류	공제대상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명바꾸지...	창동범면화우...	140-02-...	일반	783,34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명바꾸지...	창동범면화우...	140-02-...	전통시장	5,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명바꾸지...	창동범면화우...	140-02-...	대중교통	64,9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명바꾸지...	초신마광 광삼...	202-81-...	일반	919,210

인별합계 : 1,772,450 원

선택 : 4 건    선택합계 1,772,450 원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제공되는 공제대상금액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18.1.15.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제대상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보험료, 국세·지방세, 공과금등 공제제외대상이 차감된 금액임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와 형제자매는 제외)

• 체크(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카드사용금액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조회됨

○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 선택합니다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 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and '상담/제보'. Below this, a breadcrumb trail shows '(근로자)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A red box highlights the '공제신고서작성' button in the main menu, with a red circle and the number '1' above it. The main content area shows a list of tax categories with checkboxes: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The '국민연금' checkbox is checked. A modal window titled '공제신고서 작성' is open, displaying instructions and a list of items to be declared. A red box highlights the '공제신고서 작성' button at the bottom of the modal, with a red circle and the number '2' above it. The modal text includes: '공제신고서에 반영될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대상임에도 선택이 안된 자료가 있거나 잘못 선택한 경우 간소화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내려받은 파일을 열 수 없는 경우 자료실에서 Adobe Acrobat Reader 9.0.exe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and '※ 기본 확인을 위해서는 자료실에서 전자문서 PDF 기본결정 플러그인(SetupPDFPlugin.zip)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엔 간소화 자료를 재 선택 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으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3. 근무처 선택 및 입력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 근무지와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나, 맞벌이 절세안내를 이용하시려면 총급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등록된 기초자료는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하니,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현)근무지 (단위: 원) **2** 추가 선택내용 삭제

선택	1	근무처 사업자번호	상호	총급여	비고	연금보험료합계금액
<input type="radio"/>	101-82-	확인	다침완선 공어용...	33,000,000	간편제출(지급명...	2,000,000

· 종(전)근무지 자료 **3** 추가 선택내용 삭제

선택	근무처 사업자번호	상호	총급여	결정세액	연금보험료합계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1-11-11111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0	0

**4** 반영하기 닫기

○ 공제신고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이후부터는 Step1.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 ①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회사에서 입력한 주(현)근무지 정보가 조회되며, 주(현)근무지를 선택하면 입력된 급여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②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근무지를 신규 입력하여 주(현)근무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제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사에서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 정보를 입력한 경우 주(현)근무지 선택 시 하단에 종(전)근무지 자료가 조회되며, 그 외의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단, 추가 버튼을 통해 종전 근무지를 입력할 경우 **총급여와 결정세액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정보는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 자료 등록으로 입력합니다.
- ④ 근무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4. 기본사항 입력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바로가기 ▶ 6 발급목록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화면 가기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알뜰이 근로자 절세안내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안내 화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Step.01 기본사항 입력 Step.02 부양가족 입력 Step.03 공제한목별 지출명세 작성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회사로부터 공제신고서 제출을 요청 받은 근로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순서에 따라 작성한 후 총급여 또는 PDF로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사업자등록번호와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알뜰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총급여를 입력해야 이용 가능)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가 등록된 총급여액 등을 자동 반영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을 클릭 가능하며, 회사가 총급여액 등 자료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총(전)근로자의 총급여액은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을 눌러 입력 가능)

성명바꾸지마세요 님 | 다침완선 공여용영신우감도 101-82-42933

공제신고서 초기화

● 기본사항 입력

● 기본사항

주민등록번호	800101-*****	1	2	소득자 성명	성명바꾸지마세요
사업자등록번호	101-82-*****	수정	종사업장추가	근무처 명칭	다침완선 공여용영신우감도
세대주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세대주 <input type="radio"/> 세대원			국적	KR   대한민국   선택
근무기간	2017-01-01 ~ 2017-12-31			거주지역	KR   대한민국   선택
거주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거주자 <input type="radio"/> 비거주자			분납신청여부	<input type="radio"/> 신청 <input checked="" type="radio"/> 미신청 ※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시 신청가능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input checked="" type="radio"/> 120% <input type="radio"/> 100% <input type="radio"/> 80% ※ 선택가능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전년과 동일 <input type="radio"/> 변동				
총급여	33,000,000 원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Step.01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는 근무기간, 세대주여부, 거주구분 등 근로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120% 선택 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세액의 120%를 원천징수함
- 분납신청여부 : 항목에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3회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 거주구분 : 비거주자를 선택하는 경우 본인 외의 부양가족과 연금보험료 외 소득·세액 공제명세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①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변경 했을 경우에는 수정 버튼 클릭 후 근무처 선택에서 반영하기를 해야 수정된 정보가 반영됩니다.

② 종사업장을 추가 할 때 사용합니다. 종사업장 추가는 사업자번호, 총급여, 결정세액만 입력 가능합니다.

③ 공제신고서를 초기화 할 때 사용합니다. 초기화가 되면 간소화 자료 선택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5. 부양가족 입력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화면 가기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안내화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Step.01 기본사항 입력

Step.02 부양가족 입력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이 화면에서 제공되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부양가족 중 간소화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명단입니다.  
 명단에 있는 부양가족 외에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또는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눌러 개별적으로 추가하고,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성명바우지마세요님 | 다침환선 공여용영신우감도 101-82-42

부양가족 입력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부양가족(인적)공제 명세

부양가족 추가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선택삭제

관계	내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출생입양 6세이하
소득자 본인	내국인	성명...	80-1...	Y	N	N	N	N	N
배우자	내국인	파목가	86-2...	N	N	N	N	N	N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Y'로 선택하시고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Step.02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 관계는 전년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된 관계이며,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 연말정산 시 제출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선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출생·입양 공제 내역이 있을 경우 첫째, 둘째, 셋째이상 중 해당 사항을 선택

## 6. 소득·세액공제 명세 입력 화면

●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 소득공제 명세 (단위 : 원)

공제항목명		①간소화자료 (국세청자료)	②기타 자료 (직접수집자료)	합계(① + ②)
<input type="checkbox"/> 연금보험료공제	④ 수정	0	100,000	100,000
- 국민연금보험료		0	100,000	100,000
- 국민연금보험료외 공적연금보험료		0	0	0
<input type="checkbox"/> 특별소득공제		2,899,983	1,126,436	4,026,419
- 국민건강보험	④ 수정	0	100,000	100,000
- 고용보험		0	100,000	100,000
<input type="checkbox"/>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④ 수정	2,218,043	26,436	2,244,479
- 대출기관		2,218,043	26,436	2,244,479
- 거주자		0	0	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④ 수정	681,940	900,000	1,581,940
개인연금저축	④ 수정	2,400,000	100,000	2,500,000
주택마련저축	④ 수정	640,000	100,000	740,000
신용카드	④ 수정	1,761,436	1,600,000	3,361,43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④ 수정	5,800,000	100,000	5,900,000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소득공제(기타)		1,700,000	900,000	2,600,000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④ 수정	1,700,000	100,000	1,800,000
- 투자조합출자 등	④ 수정	0	600,000	600,000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④ 수정	0	100,000	100,000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④ 수정	0	100,000	100,000

● 세액감면·공제 명세 (단위 : 원)

공제항목명		①간소화자료 (국세청자료)	②기타 자료 (직접수집자료)	합계(① + ②)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④ 수정	0	400,000	400,000
- 과학기술인공제		0	0	0
- 퇴직연금		0	200,000	200,000
- 연금저축		0	200,000	200,000
<input type="checkbox"/> 특별세액공제		9,804,710	1,500,000	11,304,710
<input type="checkbox"/> 보험료	④ 수정	813,080	200,000	1,013,080
- 보장성		813,080	100,000	913,080
- 장애인전환보장성		0	100,000	100,000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④ 수정	1,378,000	200,000	1,578,000
-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난임시술비		1,378,000	100,000	1,478,000
- 그 밖의 공제 대상자		0	100,000	100,000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④ 수정	7,611,630	100,000	7,711,630
- 소득자 본인		1,810,590	0	1,810,590
- 취학전 아동(0명)		0	0	0
- 초·중·고등학교(8명)		5,801,040	0	5,801,040
- 대학생(대학원 불포함)(0명)		0	0	0
- 장애인(1명)		0	100,000	100,000

기부금	수정	2,000	1,000,000	1,002,000
- 정치자금기부금		0	0	0
- 법정기부금		0	1,000,000	1,000,000
- 우리사추기부금		0	0	0
- 지정기부금 종교외		2,000	0	2,000
- 지정기부금 종교		0	0	0
철세액	수정	0	5,000,000	5,000,000
주택차입금	수정	0	563,635	563,635
세액감면	수정			
외국납부세액	수정	0	3,563	3,563

- 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는 ①간소화 자료(국세청 자료)에 반영됩니다.
- 추가 수집한 자료는 각 항목별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명세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자료는 ②기타자료(직접 수집자료)에 반영됩니다.

## 7. 각 공제항목별 내역 확인 및 추가수집자료 입력

### ○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 고용)

#### 연금보험료공제

간소화 자료 납입금액 : 0 원
(단위 : 원)

항목	간소화(국세청)자료		회사(근로자)제출자료		추가납입금액	공제대상요건
	납입금액	차감액	주(현) 근무지	종(전) 근무지		
국민연금	0	0	0	0	100,000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로 전액공제
공무원연금	-	-	0	0	0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군인연금	-	-	0	0	0	군인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	0	0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별정우체국연금	-	-	0	0	0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가 등록한 연금보험료가 자동 반영되며,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는 간소화에서 선택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간소화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 등록 자료를 우선 적용)  
 \*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한 연금보험료(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지역가입자·후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 금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반영하기

#### 보험료

간소화 자료 금액
(단위 : 원)

\* 소득월액 : 0 원, 보수월액 : 0 원

항목	간소화(국세청)자료		회사(근로자)제출자료		추가납입금액	공제대상요건
	납입금액	차감액	주(현) 근무지	종(전) 근무지		
건강보험료	-	-	1,500,000	0	100000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	-	0	0	0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가 등록한 건강보험료가 자동 반영되며,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는 간소화에서 선택한 건강보험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간소화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 등록 자료를 우선 적용)  
 \*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반영하기
닫기

○ 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를 간소화시스템에서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등록한 금액이 우선적으로 반영됩니다.

○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합니다.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X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차입구분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차감	기타	상환액 합계
대출기관	2,454,686	236,643	26,436	2,244,479
거주자	0	0	0	0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총급여 5천만원 이하만 공제 가능)**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대주(貸主)	주민등록번호	금전소비대차 계약 개시일	금전소비대차 계약 종료일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계	운
[...]	[...]	[...]	[...]	[...]	0	[...]

2) 임대차 계약내용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임대인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택 유형	주택계약 면적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물건지)	계약서 계약기
[...]	[...]	[...]	[...]	[...]	[...]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 항목에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상단의 거주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X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가능) 가 공제 대상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세대주 여부, 국민주택규모, 2주택 보유 여부 등 소득공제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 이므로 하단의 공제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공제 받으신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차입시기	상환기간 방법	한도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차감	기타자료	합계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600만원	0	0	100,000	100,000
	15년~29년	1,000만원	0	0	100,000	100,000
	30년 이상	1,500만원	0	0	100,000	100,000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00만원	372,585	0	100,000	472,585
	15년 이상 기타	500만원	0	0	100,000	100,000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1,800만원	0	0	100,000	100,000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00만원	309,355	0	100,000	409,355
	15년 이상 기타	500만원	0	0	100,000	100,000
	10년 ~ 15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300만원	0	0	100,000	100,000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하단의 자료를 참고하여 상환기간 등 공제 요건을 검토한 후 기타자료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에서 제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급기관	대출종류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상환 차입금	당해년원금 상환액	최초 차입일	최종상환 예정일	상환기간	주택
생물초양 판...	해당없음	40,000...	0	40,000...	690,000	2015-09-02	2030-09-02	15년	201
(역) 대판...	해당없음	22,000...	0	22,000...	21,161...	2012-08-06	2042-08-06	30년	201

※이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연장, 전환) 관련내용 펼치기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 항목에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하단에는 간소화에 수록되어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자료가 조회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차입기간이 10년 미만 등의 사유로 자동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공제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공제대상인 경우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 ○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

---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개인연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건)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공제한도 : 72만원)  
※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한	00	1,041,000	0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새마을금고	00	1,000,000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선택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가입일자	납입금액	차감금액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국민은행		2007-07-18	240,000	0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	농협중앙회 및 산하기관		2009-06-01	400,000	0

·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선택	주택마련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가입일자	납입금액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새마을금고		2017-01-02	1,000,000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의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자	자료구분	기간구분	소계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사용액
성명바꾸	국세청자료	연간	20,655,921	0	12,253,243	5,620,280	21,300	2,755,092
한판정	국세청자료	연간	19,000	0	0	0	19,000	0
한판정	기타자료	연간	-19,000	0	0	0	-19,000	0
합계			20,655,921	0	12,253,243	5,620,280	21,300	2,755,092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사용금액과 다른 경우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기타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법인 비용,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월세액 공제대상인 월세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있는 경우 자료 추가를 선택한 후 차감할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차감할 금액을 -1,000,000 형식으로 입력)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를 차감할 경우 ‘자료 추가’를 클릭하고 ‘-’ 값을 입력합니다.
  - \* 증가액의 경우 증가한 금액을 입력
- 신용카드 등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간소화에서 해당 카드사의 자료를 선택해제하고 자료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기타자료로 입력합니다.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간소화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였더라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자료에 반영하지 않음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취급기관명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input type="checkbox"/>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식회사		3,000,000	500,000
<input type="checkbox"/>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식회사		3,000,000	700,000
<input type="checkbox"/>	농협중앙회 및 산하기관		700,000	200,000
<input type="checkbox"/>	(주)국민은행		1,000,000	500,000

**·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취급기관명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input type="checkbox"/>	새마을금고		100,000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연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요약설명	-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하지 시 퇴직소득세 과세 (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년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 공제 금액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원)</span>		
구분	납입금액	차감금액
국세청자료	1,800,000	100,000
기타자료	100,000	0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 연금계좌

연금계좌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계좌**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경남은행		600,000	0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경남은행		600,000	0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		8,519,160	519,160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소기업은행		600,000	0

-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새마을금고			1,000,000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연금저축	새마을금고		1,200,000	0

-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보험료

보험료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보험료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는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에서 선택한 보험료 자료 중 주피보험자와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험료 내역에 반영됩니다.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주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지만 종피보험자 중 1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보험료내역에 반영되지 않으니 '자료추가'를 눌러 보험료 내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료 내역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	피보험자	자료구분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국세청자료 차감
<input type="checkbox"/>	미안명	국세청자료	50,000	0	0
<input type="checkbox"/>	미안명	국세청자료	144,000	0	100,000
<input type="checkbox"/>	미안명	국세청자료	398,400	0	100,000
<input type="checkbox"/>	미안명	국세청자료	520,680	0	100,000
<input type="checkbox"/>	한돌법	기타자료	100,000	0	0
<input type="checkbox"/>	한돌법	기타자료	0	100,000	0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 의료비

의료비
X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1.15.~1.17)**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 1.20.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1월20일 이후에도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수집하여** 기타 자료에 입력하고 증빙서류는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의료비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은 국세청자료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 자료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난임시술비를 국세청차감액에 입력하여 차감한 후 기타자료에 입력하시고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비가 근로자 본인 등(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음)에 속하는 경우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의료증빙코드	공제종류	상호	건수	안경구입금액여부	지출액	국세청차감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돌법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본인 등	교훈준행하...	1	Y	600,000	100,000
<input type="checkbox"/>	한돌법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본인 등	차주	1	N	1,078,000	0

※ 안경구입비는 인별 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료 자료 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의료증빙코드	공제종류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건수	안경구입금액여부	지출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돌법	선택	본인 등	<input type="text"/>	확인	1	N	<input type="text"/>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지출액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에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과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 차감액'에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세청자료에서 차감한 후 기타 자료에 공제종류를 난임시술비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 사생활 보호등 사유로 난임시술비를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지 않음
- 간소화자료에 50만원을 초과하는 안경 구입비가 있을 경우 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감액해야 합니다.

○ 교육비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는 회사로 제출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교육비 지출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재학 중인 학교 등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	피교육자	자료구분	공제종류	공납금	공납금 차감액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 차감액	체험학습비	체험학습비 차감액
<input type="checkbox"/>	성명바꿈	국세청 자	소득자본인	480,560	0	0	0	0	0
<input type="checkbox"/>	한어밤	기타 자료	초·중·고등학교	500,000	0	300,000	0	300,000	0

※ 교복구입비(체육복 포함)는 중·고등학생에 한해 인별 50만원 한도로 공제가능하며, 교복구입비를 포함하여 교육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에 한해 인별 30만원 한도로 공제가능하며, 체험학습비를 포함하여 교육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공납금 차감액’ 또는 ‘교복구입비 차감액’에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서 교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가 공제한도(교복 구입비 50만원, 체험학습비 30만원)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차감액을 입력해야합니다.

## ○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추가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는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기부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연도 기부 명세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	자료구분	기부코드	기부내용	기부자	기부처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성명)	
<input type="checkbox"/>	국세청 자료	법정기부금	금전	성명바꾸지마	307-07-	확인	해충약중
<input type="checkbox"/>	국세청 자료	종교단체 외 지	금전	성명바꾸지마	307-07-	확인	해충약중
<input type="checkbox"/>	국세청 자료	종교단체 지정	금전	성명바꾸지마	307-07-	확인	해충약중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료	---선택---	금전	---선택---		확인	

기부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단위: 원)

기부종류	기부자 구분						
	합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외
합계	210,000	210,000	0	0	0	0	0
법정기부금	60,000	60,000	0	0	0	0	0
종교단체 지정...	80,000	80,000	0	0	0	0	0
종교단체 외자...	70,000	70,000	0	0	0	0	0

기부금 조정 명세
이월분 입력
선택내용 삭제
이월기부금확인
(단위: 원)

☐	기부금 코드	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
<input type="checkbox"/>	법정기부금	2017	60,000	0	60,000
<input type="checkbox"/>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	2017	70,000	0	70,000
<input type="checkbox"/>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2017	80,000	0	80,000
<input type="checkbox"/>	---선택---		0	0	0

반영하기
닫기

- 간소화자료는 자료구분을 ‘국세청자료’로, 회사에서 등록한 회사 일괄 기부금 자료는 ‘회사 자료’로 미리 채워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기부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와 기부금 조정 명세는 자동 계산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에 입력합니다.
- 이월기부금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이월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8. 신고서 및 첨부서류 확인

≡ 조회/발급
9 증명발급안내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화면 가기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안내 화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Step.01  
기본사항 입력

Step.02  
부양가족 입력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의 지출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액공제액은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완료한 공제신고서를 **종이로 출력** 또는 **PDF로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회사가 근로자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제출(간편제출하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여부는 step.01 기본사항 입력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을 눌러 확인 가능합니다.)

성명                      님 | 다침완선 공여용영신우감도 101-82-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공제신고서 출력
예상세액 계산하기
간편제출하기
설문조사 가기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공제 신고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의료비 지급명세	기부금 명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	-----------------------	----------	--------	-----------------

**인적사항**

소득자 성명	성명 <span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0 20px;">                    </span>	주민등록번호	- <span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0 20px;">                    </span> 1-*****
근무처 명칭	다침완선 공여용영신우감도	사업자등록번호	101-82- <span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0 20px;">                    </span>
세대주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대주 <input type="checkbox"/> 세대원	국적	대한민국(국적코드: KR)
근무기간	2017.01.01 ~ 2017.12.31	감면기간	
거주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거주자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	거주지국	대한민국(거주지코드: KR)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년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변동	분납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신청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input type="checkbox"/> 1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80%		

- 기본정보에서 입력된 총급여와 Step3. 소득·세액공제명세에서 수정·추가 입력한 지출금액을 확인합니다.
- 각 부속명세서를 클릭하여 부속명세서를 확인합니다.
- 지출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시 Step3으로 이동하여 지출금액을 수정합니다.
- 신고서 작성 완료 후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간편제출 이용 가능
- \* 간편제출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23 -